

구미과학관 간판 교체 및 제작 설치 과업지시서

2024년 3월

 구미전자정보기술원

I. 과업 개요

1 과업 개요

- 가. 과업명 : 구미과학관 간판 교체 및 제작 설치 용역
- 나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
- 다. 소요예산 : 16,225,000원(금일천육백이십이만오천원) (VAT포함)
- 라. 설치장소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과학관
- 마. 설치규격 : 기존옥외(현관) LED간판 : 60cm * 60cm 철거 후
제작 설치(1식)
기존옥외(후면) LED간판 : 140cm*140cm 철거 후 제작 설치(1식)
[신규] 옥외(측면) LED 간판 : 150cm * 150cm 제작 설치(1식)
[기타] 지주식 안내 간판 : 400cm * 100cm * 두께 20
스테인레스강 구조물에 대한 도색 및 시트 제작 설치(1식)
- 바. 계약방법 : 기술원 홈페이지 공개 견적 공고

2 추진배경 및 목적

본 지시서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과학관 노후로 인한 간판 교체 작업 및 과학관의 위치 파악과 효과적인 홍보 목적으로 과학관 건물과 조화로운 디자인의 옥외 간판(LED 조명 포함), 지주간판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설치

3 과업 범위

□ 과업범위

- 가. 옥외 LED 간판 디자인(시안), 제작 및 설치
- 나. 기존 설치된 현관(LED조명), 후면(LED조명) 간판 철거후 제작 및 설치
- 다. 추가로 측면(LED조명) 간판 제작 및 설치
- 라. 과학관 안내 지주식 스테인레스강 구조물 보도블럭 땅파기를 통해서 기둥(지주대)을 땅속에 매립, 상황에 따라 콘크리트 보강 매립작업

마. 기존 간판 철거

II. 과업 내용

1

세부 내용

가. 간판의 제작·설치

1)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

가) 과업기간 내, 기존 간판에 대한 철거 및 신규 간판 설치 완료

나) 간판 디자인(시안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※ 제출서류 : 시안, 산출내역서 및 상세작업내역 각 1부

2) 옥외 LED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

가) 일반기준

구분	간판 설치 기준
일반지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, 구미시 옥외광고물 조례 범위 내에서 디자인(시안)
수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로형 현관LED간판1식, 후면LED간판 1식, 측면LED간판 1식, 주차장 안내 지주간판 1식
재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물의 외부마감재와 조화로운 재질로 표시 ■ 날 글자(총 15자) 채널 문자 간판 ※ 재질 샘플 확인 후, 간판 설치
색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구미과학관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색채 사용
조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야간에도 표현하고자하는 문자에 대한 인식(식별)이 가능할 수 있도록 LED 조명 채용 ■ LED모듈(12W, 2,000개 이상), SMPS-전원 변환 공급장치(300W, 식당 2개씩, 총6개) 설치
글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구미과학관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글씨체 사용
벽면이용 간판 (가로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물 외부 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 (베이스판 설치 후 입체형 설치) ■ 현관 간판 크기 : 60cm×60cm, 후면 간판 크기 : 140cm×140cm, 측면 간판 크기 : 150cm×150cm, 지주 간판 : 400cm×100cm× 두께 20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간판 설치 시, 안전성 및 시안(디자인)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■ 기존 간판 철거 및 폐기물처리 시, 관련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 처리

※ 일반기준의 간판설치 기준 변경사항 필요시, 발주처와 협의 조정이 필요(단, 지주식 간판에 대한 과업은 단순 도색 및 시트지 작업으로 별도의 설치기준을 두지 않는다.)

나)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, 간판 디자인이 변경되었을 경우, 새로

운 간판으로의 교체가 용이하도록, 간판게시틀(가로형간판 베이스 채널바)을 설치

다) 색상 및 디자인

- (1) 건축물의 마감재와 조화로운 색상 및 건축물의 규모, 형태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디자인하되 주변 경관의 자연미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건물 주변의 자연적 특성과 입지를 충분히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글씨(문자)체는 구미과학관 특성(이미지)에 맞도록 디자인한다.
- (4) 야간에도 구미과학관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LED 조명을 충분히 고려하여 디자인한다.

라) 구조물의 안전성 등 제반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및 제작 하여야 한다.

3) 간판 재질 및 마감재 등

- 가) 간판 주재료는 옥외 환경 조건에서도 충분히 동작하고, 견딜수 있는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만 한다.
- 나) 하절기 또는 동절기의 온도와 강수,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그 형태나 색채가 쉽게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다) 간판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표준(KS)규격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
4) 간판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

- 가) 보행자 및 건물의 안전에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, 쉽게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나) 구조물의 안전성 등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디자인하여야 한다.
- 다) 유지·보수가 쉽고, 관리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

야 한다.

5) 기타사항

시공된 간판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최소 1년(무상)으로 한다. 하자가 발생한 경우, 과업(용역)수행자 즉각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, 귀책 사유가 건물주에 있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.

III. 과업 수행 지침

1 일반사항

가. 사업수행자의 의무

- 1)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,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만 한다.
- 2)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,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.
- 3)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, 과업에 착수하여야한다.
- 4) 과업수행자는 수행 중인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5) 시공 중, 디자인(시안) 변경 사항이 발생시 과업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변경 시공토록 한다.

나. 과업수행자의 책임

- 1)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로서

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, 과업수행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·조치하여야 한다.

2)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

과의 협의사항,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,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3)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한다.

4)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간판 철거·제작 및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가) 천재지변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

나) 디자인 변경 사유로 간판 철거·제작 및 설치의 중지를 발주청에서 지시하였을 때

다) 간판 철거·제작 및 설치의 지체 사유가 발주청에 있을 때

다. 기술자 등의 교체

1)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있어서 불성실하거나,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2) 책임기술자가 일정 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3) 과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라. 착수계 제출

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, 현장대리인계, 보

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마. 특허권의 사용

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바. 과업내용의 변경 및 설계변경 조건

- 1) 발주청의 정책변경이나,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,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- 2) 대가(용역비)는 용역 결과 제작설치비 증가 또는 용역성과품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수급자(과업수행자)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사. 보안사항

- 1)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직원교체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만 한다.
- 2)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, 자료의 외부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시에는 과업수행자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한다.

아. 과업수행 및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

발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또는 추가자료 발생시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, 즉시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
자. 안전관리

- 1)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법규에 의거 시행하되,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, 사전에 안전조치 완료후 과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해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2) 사고로 인한 인적·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착되며,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·형사

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차. 기타사항

- 1)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· 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디자인 보완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2) 본 과업 수행 중,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(도면 등)에는 과업 책임기술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모든 과업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4) 과업 시행에 앞서 필요시에는 발주청의 관련 부서에 사전협의 및 자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만 한다.
- 5) 본 과업으로 수급인이(과업수행자가)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, 수행자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.
- 6)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 내용 중,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,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.
- 7)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시는 국내 및 국외의 자료 및 사례를 수집하여 본 과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, 주 공정에 관련된 물품 확정시(포장 재질 및 색채 등) 확정 예정인 물품이 시공 완료된 선진지를 사전 답사하여야 하며, 소요되는 제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.
- 8) 간판은 자중 및 풍압 등을 고려하여 탈락, 전도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, 관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실시설계 안내사항

- 가. 시공 중, 디자인(시안) 변경 및 제작설치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만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, 이와 관련한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.
- 나.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(KS 표시품)으로 사용하여야 하며,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만 한다.
- 라. 간판 제작 예산이 한정된 재원이므로 설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.

3. 제작 및 설치

- 가. 디자인(시안)이 완료된 도면에 의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제작 및 설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나. 간판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·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.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라. 옥외간판 철거·제작 및 설치의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(시공 전, 시공 중, 시공 후)을 건별로 촬영하고, 완공 시 제출하여야만 한다.
- 마. 간판 제작·설치 완료 후, 감독관에게 설치확인서 사인을 받아 준공계, 준공검사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4.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간판 철거·제작 및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.

- 가. 작업자가 디자인(시안)과 상이한 제작 및 설치(철거)를 할 경우
- 나. 불완전한 작업을 하거나, 기타 사정으로 간판 철거·제작 및 설치의

지연 또는 작업을 소홀히 할 경우

- 다.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작업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
- 라. 기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

5. 행정사항 및 기타

과업수행 시,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만 하고, 만약 과업수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,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.